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1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9. 9.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청소년보호법이 1999.2.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7.1 부터 시행되고 동법 부칙제3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율령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토록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구보 등에 게재토록 함.
- 여건변동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게재토록 규정함(안 제5조)
-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주요 구역내에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토록 규정함(안 제6조)

-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필요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었으나, 청소년보호법(1999.3.31 법률 제5942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제25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동 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음.
-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는 입법체계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할구역 내의 주민과 업주에 대한 계몽·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업무증가에 따른 적정인력의 배치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마포구 관내에 24시간 청소년 통행 금지를 하는 곳이 있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현재 관내에서는 노고산동의 여관 밀집지역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통행금지구역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통행금지 표지판, 안내판, 초소를 설치하고 노면에 표시를 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단속은 누가 하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1차적으로는 해병전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익요원을 투입할 예정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신분증을 확인하고 강제퇴거시키나 선도적 차원에서 운영할 예정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업주들의 반발이 클것이고 해병전우회가 단속권한이 있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업주나 주민에게 불편을 줄것은 사실이며 반발이 예상되는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출입금지구역으로 할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며, 청소년 보호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 보호 책무를 갖고 선도할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청소년을 제도적으로만 억압하고 단속해서 더 큰 호기심만 불러오지 않을까?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상위법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어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한 다음 문제점이 노출될 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이 하오 7시부터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지?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관할 구역 주민 1,000명이 연명하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준다면 이곳 저곳 닥치는데로 신청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청소년은 어떻게 다닐수 있는지?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아무곳이나 다 대상이 아니고 안 제2조제2항에 청소년 통행제한 지정대상이 있음.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심의기관이 있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심의기관은 없고 마포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예정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통행금지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일반 가정집이나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임.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조례를 정하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한이나 완화 등 조치할 예정임.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9. 16. 김유현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6.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칭 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당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 ②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이 1999.2.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7.1부터 시행되고 동법 부칙제3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율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토록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1) 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2)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구보 등에 게재토록 함.

라. 여건변동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게재토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주요 구역내에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토록 규정함(안 제6조)

바.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감시 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청소년보호법(1999.2.5. 법률 제5817호) 제25조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1호)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1) 감시초소 설치·운영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다. 합 의 : 예산조치 등 합의완료

라. 규제여부 : 1999.8.31 제2회 규제개혁심의회 심의 절차 거쳤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99.7.20 ~ 8.9)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및 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마포경찰서,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지체없이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지체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당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의 지정목적 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포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